

정치 권위의 시작과 끝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본 국가의 역할과 한계

성기진

개요

첫째, 권력과 권위에 관련된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한다.

둘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철학자들의 몇 가지 시도를 소개하고, 각각의 철학적 문제점과 세계관적 위험성을 알아본다.

셋째, 국가 권위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본다.

권력과 권위, 강압과 복종

권력(power, *macht*)을 통한 지배와, 권위(authority, *herrschaft*)를 통한 지배는 다르다. 권력은 군사적, 경제적 강압을 통해 복종을 이끌어내지만 권위는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불특정 다수의 인정과 동의가 필요하다. 돈으로 얻은 지배력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 사라지지만,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무력이나 재산이 없어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¹⁾ 이 강의에서는 권력이 아닌 권위에 집중하려고 한다.

정치 권위의 시작

현대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개념은 서유럽에서 30년 전쟁 이후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phalia)로부터 비롯된다. 교황청이 여러 나라의 내정에 자유롭게 간섭하던 중세의 정치 구조는 이로써 막을 내리고, 각 나라가 영토와 주권을 보장받

1) 권위를 상실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권위는 법적 지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가?), 객관적 실력 (재임 중 경제성장률이 얼마인가?), 사회적 이미지 (뇌물수수 혐의나 섹스 스캔들이 없는가?) 등 여러 가지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런 요소들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 권위를 상실한 지도자는 오직 권력에 의존하게 되므로, 더 큰 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등장하면 지배력을 상실하기 쉽다.



이 문서는 라브리공동체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으며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및 소량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the online library of L'Abri Fellowship Korea. All copyright belongs to the author. Printing, copying and small-scale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personal and group study.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라브리공동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 (+82) 033-673-0037 ✉ yangyang@labri.kr

www.labri.kr

게 되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현대 국가를 “일정한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의 소유와 사용을 독점하는 정치적 조직”이라고 정의했다. 일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임의로 감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고 신체를 구속할 권리를 가진다. 물리력의 사용을 독점하는 것이다. 또한 일개 개인이 국가의 물리력 독점에 반항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대의 국가는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국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국가가 복종을 요구할 권리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옛날에는 이런 의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역적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체 그 사람(왕,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이 뭐길래 내가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인가?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만약 권력만을 고려한다면, 국가가 보유한 군사력(경찰 및 사법기관 포함)과 경제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복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권력뿐 아니라 권위도 얻고 싶다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도덕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베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전통적 권위 (traditional authority):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누려온 권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회 구조이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절대 왕정을 유지하는 나라라면 특정 가문의 후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2. 카리스마적 권위 (charismatic authority): 특정 개인의 비상한 능력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권력 구조이다. 상당수의 군사 독재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처럼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양상을 띤다.

3. 법-합리적 권위 (legal-rational authority):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특정한 지위에 오른 사람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권력 구조로, 법치주의라고도 한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도자가 교체될 경우 예전의 지도자에게는 더이상 복종하지 않는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법-합리적 권위를 통한 지배 구조를 지향하며, 전통적 또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누리는 지도자들도 권력 유지와 미화를 위해 자신의 지배를 법-합리적 권위로 포장하곤 한다.

법-합리적 권위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권위보다 월등히 우수한 이유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 권위는 왕가의 자손들이 태생적으로 어딘가 남들과 다르다고 가정하고, 카리스마적 권위는 지도자 개인의 비상한 능력을 차별화하려고 하지만, 법-합리적 권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특정 인물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회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더 높은 원칙, 즉 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법-합리적 권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최고 지도자도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새뮤얼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가 말했듯이 법이 왕이고(Lex Rex), 모든 국민은 법 아래에서 평등한 것이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그렇다면 법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법에 복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권위는 평등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 과거의 권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까 제기했던 “국가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직 대답을 찾지 못했다. 국가의 권위가 법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법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할까? 허구헌날 TV 카메라 앞에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 양반들이 멋대로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법이 언제나 옳기 때문”은 답이 될 수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법이 틀린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철학자 조셉 라즈(Joseph Raz)는 “국가가 권위를 가지려면 심지어 법이 틀린 경우에도 복종할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²⁾ 정치철학자 조나단 울프(Jonathan Wolff)도 “법에 복종할 의무는 법의 정확성과 무관하다”고 말했다.³⁾ 현행법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법을 어기기 시작한다면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근현대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 정치적 의무(political obligation)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법을 어기면 잡혀간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모두 인정하지만, 만약 불법을 저지르고도 잡혀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심지어 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현행법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자베르 형사를 따돌리고 코제트를 구하러 간 장발장처럼, 법을 어기더라도 약자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더 옳은 일이 아닐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법이기에 때문에”(because it is the law) 법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현대 철학자들의 대답

1. 명시적 동의 (Express consent)

법은 우리 모두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말을 어릴 때 대부분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법을 일종의 약속으로 보는 이런 생각은 17세기 영국의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존 로크(John Locke), 18세기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등이 제안한 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 theory)에서 비롯된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일생일대의 계약이다. 계약에 도장을 찍었으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

명시적 동의 이론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중 극소수를 제외하면 어느 나라의 헌법이나 법률, 조례에도 실제로 도장을 찍은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나 미국의 충성맹세(Pledge of Allegiance) 등을 읊었다 해도 대부분 그 맹세의 뜻도 잘 모르는 미성년자들이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효력이 발생할 리 없고, 해외로 이민가서 시민권을 취득할 때 준법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하다.

2) Joseph Raz, ed, *Authority*. Blackwell: 1990. p. 126.

3) Jonathan Wolff, “What is the Problem of Political Obligation?”,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91 (1990-91). pp. 155-156.

2. 암묵적 동의 (Tacit consent)

로크를 비롯한 일부 사회계약론자들은 실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동의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동의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로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 거주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간주해도 좋다고 말했다. 로크의 주장은 현대 사회에서도 “투표를 했다면 선거 결과에 동의하는 것”이라든지, “세금을 냈다면 법에 동의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나타난다.

로크의 주장에 가장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데이비드 흄(David Hume)이다. 흄은 일반 국민들 중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에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머무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의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흄의 반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거의 대부분이 어느 나라의 영토임을 지적했다.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동의”라는 개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으니 동의한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암묵적 동의의 효력을 인정한다 해도 명시적 동의나 거부보다는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명시적으로 “준법 거부 선언”을 하기만 하면 더이상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3. 감사 (Gratitude)

2400여년 전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평생 국가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국가가 자신을 사형에 처하려 하더라도 그대로 복종하겠다고 말했다.⁴⁾ 소크라테스의 준법 선언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현대 철학자들 중에는 워커(A. D. M. Walker)가 비슷한 주장을 폈다. 워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많은 혜택을 준 사람이나 기관을 배신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⁵⁾

소크라테스와 워커의 주장에는 세 가지 허점이 있다. 첫째는 “혜택을 준 사람을 배신하지 않을 의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람(자연인)이 아닌 기업, 단체, 국가기관 등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반드시 준법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약 현행법이 악법이라면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회를 위하는 일이 아닐까? 셋째는 현대 국가가 마음씨가 좋아서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가 주는 혜택은 대부분 국민이 피땀흘려 요구한 바가 반영된 것이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는 돈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다고 소비자가 기업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4) 플라톤, <크리톤>.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아 탈옥을 돕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말리는 내용이다.

5) A. D. M. Walker, “Political Obligation and the Argument from Gratitud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7 (1988). pp. 191-211.

4. 페어플레이 (Fair play)

감사 이론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페어플레이 이론이다. 법철학자 하트(H. L. A. Hart)가 내세운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단지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협력함으로써 혜택을 발생시키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은 이런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른 국민들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⁶⁾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페어플레이 이론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반론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협력하기로 약속한 일이 없다”는 점이다.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끝인 것이다. (이 문제는 페어플레이 이론과 사회계약론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이 지적했듯이, 동네 사람들 몇몇이 모여 방송 시스템을 만들고 가끔씩 듣기 좋은 노래를 틀어 준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빠짐없이 방송 시스템의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돈 내기 싫으면 방송 안 들으면 그만이다.⁷⁾

5. 공동체 (Community)

사회계약론의 영향을 받은 이론들이 어김없이 부닥치는 “동의한 적 없다”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나온 것이 공동체 이론이다.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존 호튼(John Horton) 등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동의나 혜택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⁸⁾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은 내가 빨래, 내일은 당신이 청소”라고 명시적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국가 공동체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이론의 요점이다.

공동체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이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갖는 평범한 의무를 별다른 설명 없이 국가라는 거대한 기관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동심원으로 그리는 일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흔히 있는 일이고, 국가(國家)라는 한자말에도 집 가(家)자를 쓰긴 하지만, 실제로 현대의 핵가족과 현대의 관료화된 국가 사이에 공통점이라고는 거의 없다. 가정의 구성원들은 사랑으로 묶여 있지만 국가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서로 알지도 못한다.

공동체 이론의 또다른 문제들로는 1)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상하 복종의 관계로 단순화시켜 이해한다는 점, 2) 공동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과 국가의 법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 3) 한 개인이 속한 혈연 공동체,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 등의 요구가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공동체의 권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4)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적 압력 때문에 특정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예: 전통적 이슬람 사회에서의 여성), 그리고 5) 소속될 가치가 있는 선한 공동체와 소속될 가치가 없는 악한 공동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6) H. L. A. Hart, “Are There Any Natural Rights?” *Philosophical Review* 64 (1955), pp. 175–91.

7)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1974.

8) Ronald Dworkin, *Law's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Ronald Dworkin, “Obligations of Community”, *Authority*, ed. Joseph Raz, Blackwell: 1990. pp. 218–239; John Horton, “In Defense of Associative Political Obligations: Part One”, *Political Studies* 54 (2006). pp. 427–43; “In Defense of Associative Political Obligations: Part Two”, *Political Studies* 55 (2007). pp. 1–19.

6. 자연적 의무 (Natural duty)

자연적 의무 이론에 따르면 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동의도 혜택도 공동체 소속 여부도 아니다. 단지 법이 정의롭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자연적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살인하지 않을 의무, 강간하지 않을 의무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동의나 우리가 받은 혜택과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정의로운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20 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 롤즈(John Rawls)는 사회계약론과 페어플레이 이론의 한계를 깨달은 후 자연적 의무 이론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제러미 월드런(Jeremy Waldron), 크리스토퍼 웰먼(Christopher Wellman) 등의 현대 철학자들이 자연적 의무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자연적 의무 이론은 현대 정치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들 중 가장 단순명료하고 상식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간단한 만큼 큰 틈을 남겨두는 것이 자연적 의무 이론이다. 존 시몬스(A. J. Simmons)가 지적하였듯이, 자연적 의무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 딱히 할 말이 없다는 점이다.⁹⁾ 만약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정의를 수호하는데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든 저 나라든 교회든 기업이든 사조직이든 관계없이 충성을 바쳐야 하고, 정의 수호에 도움이 되는 법만 골라서 지키고, 악법은 모두 무시해야 한다. 만약 미국 법을 지키는 것보다 캐나다 법을 지키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다면 미국 사람들은 모두 미국 법을 무시하고 캐나다 법에 복종해야 하지 않을까? 애국심 투철하기로 유명한 미국인, 한국인들에게는 불쾌한 결론이 아닐 수 없다.

7. 다중 원칙 (Multiple principles)

위의 6가지 이론들 중 어느 하나도 법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몇몇 정치철학자들은 여러 이론을 섞어 쓰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조지 클로스코(George Klosko), 조나단 울프(Jonathan Wolff) 등에 따르면 법의 정당성을 꼭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¹⁰⁾ 정의로운 법은 자연적 의무로 설명하고, 혜택이 큰 법은 감사 이론으로 설명하고, 성인이 자유의지로 준법서약을 한 경우에는 명시적 동의로 설명하고,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은 페어플레이로 설명하는 등이다.

그러나 다중 원칙 이론도 자연적 의무 이론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을 언제나 지켜야 할 의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에 머물 뿐이다.

8. 철학적 무정부주의 (Philosophical anarchism)

자연적 의무 이론과 다중 원칙 이론의 공통된 한계는 “어떤 경우에는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9) A. John Simmons, *Moral Principles and Political Oblig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A. John Simmons,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0) George Klosko, *Political Oblig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Jonathan Wolff, “Political Obligation: A Pluralistic Approach”, *Pluralism: The Philosophy and Politics of Diversity*, eds. M. Baghamrian and A. Ingram, Routledge: 2000.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보다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철학적 무정부주의자들이다. 영어권의 철학적 무정부주의자들로는 로버트 폴 울프(Robert Paul Wolff), 존 시몬스(A. J. Simmons) 등이 있다.¹¹⁾

흔히 무정부주의라고 하면 폭력을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비폭력만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이념을 상상하기 쉬운데, 철학적 무정부주의자들은 그런 행동보다는 법의 정당성이라는 개념의 철학적 한계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 나라의 법 체계를 100%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으나, 상당수의 법률은 정의롭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딱히 국가를 전복시켜야 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 것이다.¹²⁾

현대 정치철학의 공통된 오류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고안해 낸 8가지 이론 중 법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고 우리는 왜 법에 복종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번을 받아들여 모든 법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정당화되지 않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우기는 도그마에 빠지게 된다. 반면 6-8번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든 정당화가 가능한 일부 법률을 제외하면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국가라는 것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인본주의 철학을 따라가면 이렇게 도그마와 무정부주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가 말했듯이, 인본주의 철학은 “국가가 무기를 갖고 있고 후원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에 복종할 아무런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¹³⁾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대 정치철학에 만연한 세 가지 가정을 뒤집고 기독교 세계관이 제시하는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철재 잘못된 가정은 인간을 법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다.

모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는 사회계약론은 실제 역사에 비추어 보면 픽션일 뿐이다. 사회계약론을 정립한 홉스, 로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들도 자신의 이론이 픽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론이 현대 서양 정치철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 지지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근현대 인본주의 철학의 핵심 사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핵심 사상은 바로 법의 근원은 인간이라는 생각이다.

계약 전의 상황에 대해 홉스는 비관론, 로크는 낙관론을 펴는 등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회계약론자들의 공통점은 “계약 전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법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이런 생각은 페어플레이 이론도 마찬가지이다. 사회계약론은 나의 동의에 의해, 페어플레이 이론은 다른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나의 정치적 의무가 결

11) Robert Paul Wolff, *In Defense of Anarch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1998.

12) 이렇게 온건한(?) 사상에 무정부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것에 필자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다. “일반적 정당성 불필요주의” 등의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울프와 시몬스 본인이 무정부주의자라고 우기는데 어찌겠는가?

13)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Manifesto*, Chapter 7.

정된다고 주장한다.

진 햄튼(Jean Hampton)은 사회계약론으로부터 비롯된 서양 정치철학의 사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정치 체계는 자연의 일부도 아니고 신이 창조한 것도 아니다 ... (중략) ... 국가는 철저하게 인간이 만들어낸 기관이고, 국가의 존재는 그 국가를 이루는 인간들의 행동에 전적으로 의존한다.”¹⁴⁾

이런 세계관은 정치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본주의 정치철학은 인본주의 윤리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본주의 윤리학은 모든 도덕적 의무도 인간이 자율적으로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옳고 그름의 구분을 인간이 멋대로 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권위는 순식간에 땅에 떨어진다.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이 법의 근원이라는 가정을 거부한다. 법의 근원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다. 로마서 13:1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한다. 골로새서 1:16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신법, 자연법, 인간법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법을 논의하면서 그 모든 법의 정당성이 오직 영원법, 즉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된다고 했다. 정치적 권위를 비롯한 모든 도덕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법을 만드는 하나님의 권위를 잊고 인간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모순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잘못된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사람이 꾸며낸 것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오류는 워커의 감사 이론과 드워킨의 공동체 이론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인간과 가정 공동체를 현대의 비인격적인 국가 공동체와 동일한 지위에 올려놓기 때문이다.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 적용되는 권리/의무는 산업화 이후 극도로 복잡해진 사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대 국가에서 적용되는 권리/의무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올 봄에 세상을 떠난 드워킨까지, 공동체 이론을 따르는 철학자들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다 똑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직장, 학교, 지역 사회, 동호회,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비슷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선부른 일반화는 사회계약론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개 계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도둑질이 잘못된 이유는 우리가 서로 도둑질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일 뿐이다. 계약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홉스의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서는 도둑질을 하더라도 전혀 잘못이 아니다. 인간이 동의하든 말든 절대적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의 평범한 약속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14) Jean Hampton, *Political Philosophy*. Westview: 1997.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연인(natural person)과 인간의 편의를 위한 픽션에 불과한 법인(legal person) 사이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현상은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정치판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는 법인에게도 자연인과 같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등을 주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상당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은 부유층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법인과 자연인의 경계를 허무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나친 일반화는 철학적 오류로 이어지기 쉬울 뿐 아니라, 세상 만물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세기 1:11, 21, 24, 25)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는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 이론을 통해 이렇게 인간의 이론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셋째 잘못된 가정은 법의 정당성이 0% 아니면 100%라고 못박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조셉 라즈, 조나단 울프, 소크라테스 등은 악법이라도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동체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공동체의 모든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00%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연적 의무 이론의 치명적인 허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 정치철학의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우리는 이런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이 하는 일에 100%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인간 세상의 국가에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론을 적용하려고 하면 한편으로는 정당하지 않은 법에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성 부여 작업 자체를 포기하는 무정부주의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이 세상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게 마련이다. 한 국가의 법체계라도 일부는 정의롭고 일부는 악할 수 있고, 같은 법률이라도 한 조항은 옳고 다른 조항은 틀릴 수 있으며, 같은 조항이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올바르게 적용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잘못 적용될 수 있다. 심지어 잘못 적용된 예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28)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 속에서 예상 밖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모든 도덕적 문제를 인간의 이성으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인본주의자와 달리, 기독교인은 선과 악이 혼재하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국가와 같이 복잡한 조직의 정당성이 “모 아니면 도”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를 거부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도 있다.

기독교적 무정부주의 (Christian anarchism)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대안은 자연적 의무 이론 (6번) 또는 정치적 무정부주의 (8번) 둘 중 하나와 유사한 형태를 띠지 않을까 한다. 자연적 의무 이론은 인간의 어떤 계약이나 동의보다도 우선하는 객관적인 도덕적 의무에 바탕을 두는 것은 물론, 악법에까지 100%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는 단점 — 아니, 사실은 장점 — 이 있고,

철학적 무정부주의도 음침침한 이름과는 달리 옳은 법이라면 얼마든지 지켜줄 의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건전한 기독교 정치철학이라면 이 두 가지 이론으로부터 여러 요소를 빌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둘 중 하나를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일단 무정부주의를 살펴보고, 다음 섹션에서는 성경적으로 재해석한 자연적 의무 이론을 살펴보려고 한다.

기독교인 중에도 무정부주의자가 있다. 러시아의 소설가 레오 톨스토이(Leo Tolstoy), 미국의 카톨릭 사회운동가 도로시 데이(Dorothy Day),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룰(Jacques Ellul) 등이 그 예이다. 기독교 무정부주의자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마태복음 5:34)라는 말씀대로 어느 국가에도 충성을 선언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사도행전 5:29)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폭력을 통해 국가를 전복시키기보다는 국가의 틀 바깥에서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면에서는 철학적 무정부주의자들과 뜻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사사기 21:25)는 말씀을 엘룰은 꽤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사무엘상 8:7)라고 평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처럼 전제 국가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비상시에만 임시로 지도자를 세우는 사회 구조를 원하셨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엘룰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만들어내는 국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이라고 주장한다.¹⁵⁾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성경은 언제나 정치 권력과 맞서 싸운다. 성경은 반(反)권력, 건설적 비판,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 사이에서처럼) 축소 불가능한 대화, 반(反)국가주의, 관계의 지방 분권, 모든 정치적인 것의 극단적 상대화, 반(反)이데올로기, 그리고 권력이나 지배를 주장하는 모든 것(즉, 모든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의문을 불러온다. 끝으로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성경은 일종의 ‘무정부주의’를 제시한다. (19세기 무정부주의자들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의미이다.)”¹⁶⁾

그러나 기독교 무정부주의자들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로마서 13:1)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멀쩡한 성경 말씀을 무시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상 체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증거이다.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구조를 혼동하면 안된다고 지적하였지만, 그렇다고 전자는 모두 좋고 후자는 모두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0% 아니면 100%라는 오류에 빠진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경제, 사회 구조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 왕을 내놓으라는

15) Jacques Ellul, *Anarchy and Christianity*. Wm. B. Eerdmans: 1988.

16) Jacques Ellul, *The Subversion of Christianity*. Wm. B. Eerdsman: 1986. p. 116.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이 처음에는 불쾌하게 반응하셨지만 약 40년 후에는 왕이라는 막강한 지위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군주들을 세우심으로써 그 때까지의 느슨한 지방 분권 체제 아래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영광을 드러내보이신 것이 그 예이다.

위임받은 권위

가이사(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냐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유명한 대답을 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21)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현대 정치철학에서 말하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같은 것으로 해석한다. 하나님과 가이사는 전혀 별도의 영역을 지배하는 존재이므로 각각 알아모셔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쉘퍼는 이러한 일반적 해석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쉘퍼에 따르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가이사도 하나님 아래에 있을 뿐이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가이사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기독교 정치철학이 무정부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종종 위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지도자들이 행사하는 권위는 당연히 정당하다. 심지어 악하고 무책임한 지도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요한복음 19:11)라고 과거완료 형태의 가정법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총독의 사법권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신다.

정치 권위의 한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지도자들이 위임받은 권위가 무한하지도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세상 지도자들의 권위가 0%도 아니지만 100%도 아니라는 뜻이다. 위임받은 권위의 한계는 애초에 권위를 위임하신 이유와 직결된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세상 지도자들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권면할 때는 항상 위임의 범위와 목적도 함께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

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2-7)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디도서 3:1)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3:17)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베드로전서 2:13-14)

하나님께서 세상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시는 것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응징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육체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세금 걷을 권리를 허락하시는 것도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진노(처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옳고 그름의 판단) 때문에 법을 지킬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한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법이기에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그 법이 그냥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에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정당성의 한계가 어디인지도 알 수 있다. 만약 세상 지도자가 내놓는 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그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넘어선 것이고,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¹⁷⁾ 그는 누구에게도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즉, 기독교가 말하는 정치적 의무는 롤즈의 자연적 의무 이론과 비슷한 형태를 띠지만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첫째는 정치적 의무의 근원이 인간도 자연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에는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본주의와 법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세상의 정치철학은 현행법 중 일부라도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성의 부분적 결여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

17) 사소한 법 하나를 잘못 만들었다고 지도자의 권위가 모두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권위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뿐이다. 물론 지도자가 상습적으로 월권을 저지른다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중대한 문제 외에는 탄핵을 허용하지 않는 데는 좋은 이유가 있다. 리더포드와 로크 등의 정치철학자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히 있어야 할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도록 도와 주는 경고 표지(warning sign)이다. 죄인에 불과한 인간 지도자들이 언제나 정당한 법만 만든다면 그거야말로 수상쩍은 일이 아닐까?

정치 권위의 끝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17세기 유럽의 정치철학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저서에서는 저항권(抵抗權)에 대한 언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절대 왕정을 지지했던 홉스도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허용했고, 로크는 경우에 따라 혁명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망명살이를 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은 18세기 후반 미국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영국의 폭정에 저항해 독립을 선언한 미국인들은 자기가 피흘려 세운 나라가 또다시 인권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모든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권위에 의문을 품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폭군에 대한 항거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다”라는 말을 남겼으며,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국민은 정부가 그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개혁이나 정권교체를 일으킬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의심의 여지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독재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자 저항권은 서서히 미국인들의 정치 마인드에서 잊혀져 갔다. 롤즈와 같은 20세기 후반의 미국 정치철학자들은 극히 제한된 경우의 시민불복종을 제외하면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소비하느라 바빠서 저항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21세기의 사회에서도¹⁸⁾ 정치 권위의 한계는 변함없이 유효하고, 국가가 그 한계를 넘어설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여전히 필요하다.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권력은 자꾸만 팽창하기 때문이다. 테러범을 색출하라고 미 국가안보국(NSA)을 만들었더니 민간인들의 사소한 인터넷 통신까지도 영장 없이 도맷금으로 감청하고 있더라는 최근의 폭로는 원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비대해지는 권력의 습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쉐퍼는 “시민불복종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고 강조한다.¹⁹⁾ 권력이 커지다 보면 하나님의 왕좌까지 찬탈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 요셉은 복종하지 않았다 (창세기 39장).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의 산파들은 복종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1:15-22).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명령에 에스더는 복종하지 않았다 (에스더 5장).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전도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도를 계속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가깝게는 우리 나라의

18) 소비주의가 저항권 실천을 방해한다는 생각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Theodore Adorno)와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가 쓴 <계몽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Enlightenment),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가 쓴 <1차원적 인간>(One-Dimensional man) 등의 핵심 주장이다. 꼭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자 혁명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9) Francis A. Schaeffer, *The Christian Manifesto*. Chapter 9.

기독교인들도 믿음을 버리거나 신사참배를 하라는 명령을 거역하여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 103명을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선포하여 우리 나라는 성인 숫자 기준으로 세계 4위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보면 국가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도 복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법률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법의 내용과 무관하게 “불복종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국가를 허용하신 목적과 그 목적의 한계를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 무정부주의자들로부터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면 사무엘상 8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다. 최근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국가의 도덕적 가치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 로마서 13장을 비롯한 신약성경의 말씀을 분석하는 경우는 많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국가를 처음으로 허용하시는 그 장면을 주의깊게 관찰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왕정을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국가의 권력에 대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 보일 정도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상 8:11-18)

베버가 말했듯이, 국가의 본질은 물리적 강제력, 즉 폭력의 독점적 사용에 있다. 폭력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나쁜 의미는 아니다. 타락한 인간 때문에 폭력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폭력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 역시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순기능이 있다 해도 국가의 궁극적 본질은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필요악이고,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9:8 이혼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차선책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법과 권위를 희미하게 반사할 뿐인 더러운 거울이고, 위임했던 모든 권위를 되찾아가실 마지막 날에는 불타 없어져야 할 최악의 소굴이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24)

정치적 권위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월권 행위인지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각 사람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인간으로서의) 신성한 권리이며,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양심의 고유 영역이다. 죄를 막

기 위해 죄를 더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복종과 불복종의 길 모두 어느 정도는 죄의 부스러기를 밟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는 인종차별에 불복종한 대가로 기꺼이 감옥살이를 했다. 반면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국가기관의 비리를 폭로한 후 러시아로 망명하여 처벌을 면하고 있다. 스노든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은 두 사람 모두 합리적인 양심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 0% 아니면 100%를 고집하는 세상의 인본주의적 정치철학과 달리, 모든 권위의 근원 되시는 분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는 우리는 남이야 뭐라고 하든 “쿨하게” 67.2%를 걸을 수도 있어야 한다. 알고 보면 67.2%가 진리일 수도 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처럼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도, 엘리트처럼 무조건적인 저항을 외치는 것도 건전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가 만약 한 국가의 법에 복종한다면 그것은 진노(처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옳고 그름의 판단) 때문이어야 한다. 가정이나 지역 사회,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또는 복종을 강요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범법자로 몰아붙이거나, 반대로 불복종을 강요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겁쟁이로 치부하는 것은 권위가 아닌 권력의 표현일 뿐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2)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것은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발생한 세상의 악한 권력 구조와 그 권력 구조를 둘러싼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들로부터도 자유를 누리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일개 인간의 권력(power)에 목매지 않고 국가의 목적과 한계를 냉정하게 인식하며 만유의 하나님의 주권(authority)을 절대적 기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할 수 있겠다.